

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0나5892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1256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832,1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1. 20.부터, 피고 C은 2019.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 1) 원고,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I, J는 G이 운영하는 회사들(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원고 및 관계사’라 한다)이고, F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2) D은 비닐 압축품,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배우자인 E이 하였고,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D에 관한 투자약정의 체결

- 1) 원고1)는 2015. 12. 2. D과 원고가 D에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D의 주식 55%를 이전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 및 투자에 따른 사업권 지분(포괄)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2) 이후 원고 및 관계사는 D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5. 12. 1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D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철회 및 투자금 변제약정의 체결

- 1) 원고는 D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D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은 2016. 4. 23. 이 사건 투자약정 철회로 인한 원고의 투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별지

‘원고 투자금액 정산 및 투자금반환 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반환받을 투자금이 2016. 4. 30. 기준으로 285,086,506원임을 확인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6. 4. 25. 원고가 이 사건 정산내역서상 285,086,506원을 2016. 5. 30.부터 2017. 2. 28.까지 10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변제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그 변제약정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F, G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1) D은 2016. 5. 23.부터 2016. 8. 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라 합계 94,254,325원을 지급하였으나, F, G이 D을 운영하는 동안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F과 G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2) F, G은 2020. 12. 9.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2022. 2. 9. F, G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88, 2022고단49(병합)].

F, G은 D을 운영하게 된 것을 기회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D 소유의 돈을 D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이 운영하는 A, H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1. 27.경 범행(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

F, G은 2015. 11. 27.경 경남 창원군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다시 회수할 의도로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1억 5,000만 원을 I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2. 11.경 범행(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

F, G은 2015. 12. 10.경 A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할 의도로 2015. 1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1억 2,000만 원을 A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1. 5.경 범행(이하 ‘제3 공소사실’이라 한다)

F, G은 2016. 1. 5.경 위 D 사무실에서, H와 재생 용융기 제작 및 매매 계약에 따른 부품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을 가장하여 H의 운영비를 지원해줄 의도로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4,970만 원을 이체하고, 그중 1억 70만 원을 H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6. 1. 26.경 범행(이하 ‘제4 공소사실’이라 한다)

F, G은 2016. 1. 26.경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D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를 보관하던 중, 위 D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A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의도로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G이 운영하는 L, J 등 명의의 계좌로 9,21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각 회사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이에 F, G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2. 10. 27.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F, G이 제1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D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F,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2노565, 960(병합)]. 그 후 2023. 4. 13. 항소심판결에 대한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1호증, 을 제1, 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D의 미지급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제약정에서 정한 약정금은 285,086,506원이고, 원고가 D에서 지급받은 약정금이 94,254,325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에서 원고가 D의 거래처인 M으로부터 반환받은 비닐구매 선급금 3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832,181원(= 285,086,506원 - 94,254,325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2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1) 항변 요지

D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재정이 건실한 회사였으나,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G과 그 대표이사인 F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재정 상태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철회하였는데, 위와 같이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이 폐업에 이른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G, F이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D이 2017. 3. 31.자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 F의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D이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폐업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서에는 G, F의 업무상횡령으로 D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는바(갑 제20호증 중 16쪽 참조), G, F의 업무상횡령 범행과 D의 폐업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항변에 관하여

1) 항변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변제약정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원고 및 관계사들의 입금, 출금 내역 등을 실제와 대조한 결과, D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로부터 80,603,381원을 더 반환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들은 원고 및 G, F의 기망행위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위 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4, 15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상 원고 및 관계사들의 입금, 출금액이나 그 정산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정산내역서는 D의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원고 및 관계사와 관련한 입출금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또한 2016. 4. 23.경 피고 C 및 E, G, N의 대화 내용(갑 제11호증)에 의하면, 피고 C와 O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의 기초가 된 개개의 항목에 관하여 원고 측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정산내역서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입출금 내역에 관한 D의 확인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F, G이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2 내지 4 공소사실을 보면 F, G이 D의 계좌에서 원고 및 관계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기 때문에 그 횡령한 금액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및 관계사의 출금액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F, G의 횡령행위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이전에 이뤄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F와 G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정산내역서에 오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출금 내역과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비교해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F와 G의 횡령으로 인정된 출금 내역은 위 정산내역서 작성 당시 모두 원고 및 관계사의 출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원고 및 관계사의 입금액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반영됨과 아울러 출금액에는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기에 그 정산결과에 잘못이 있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들은, 원고의 예금계좌에 ‘P’, ‘Q’, ‘R’, ‘S’으로 표시되어 출금된 금액이 F와 G이 횡령한 것이어서 원고의 출금 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 G은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에 관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갑 제14호증,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 2020형제8480호)을 받았다.

(2) D의 예금계좌에 ‘F(대표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는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금액들은 이 사건 정산내역서 작성 당시 D의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와 D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 하단에 ‘2016년 4월 30.일까지 이유불변 확정된 상기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내역서는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원고와 D은 원고 및 관계사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변제약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 철회와 관련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변제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D이 이 사건 변제약정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내역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의 주채무인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약정상 약정금 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

1)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원고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